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117
----------	-------

발의연월일 : 2025. 6. 27.

발 의 자 : 민병덕 · 김문수 · 오세희
이광희 · 윤준병 · 이수진
신장식 · 김남희 · 전용기
김영배 · 이강일 · 용혜인
최혁진 · 김현정 · 박홍근
추미애 · 양부남 · 황명선
박민규 · 서영교 의원
(20인)

제안이유

현재 가상자산은 디지털 거래의 지급 수단을 넘어 글로벌 핵심 투자 자산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미국이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xchange Traded Fund, 이하 “ETF”라 함)를 승인한 이후 세계적으로 빠르게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제약으로 인하여 국내에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이로 인하여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국내 디지털 생태계의 발전 및 금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도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관한 가상자산시장 및 금융

시장의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 및 관련 업계는 이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준비해 왔음. 특히 2024년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상자산 거래가 제도화되어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되는 등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은 단순히 가상자산 투자 수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 혁신을 위한 전략의 실행이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블록체인 생태계를 확장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제도화된 투자 경로를 제공하여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음. 투자자들은 전통 자산과 낮은 상관관계를 가진 가상자산을 활용하여 분산투자 효과를 높이고 다양한 전략형 ETF를 활용함으로써 투자 선택지를 넓히는 등 견고한 자본시장 규제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될 것임. 이는 단순한 신규 투자상품 도입을 넘어 국내 ETF 시장의 구조적 경쟁력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자금 유치의 통로로도 작용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의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에 관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국내 자본시장에서도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 현물 ETF를 설정·판매하고 투자자들은 이를 통하여 가상자산에 간접투자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및 자연적·환경적·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인 기초자산의 범위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4조제10항).
- 나.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등에 한정된 신탁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포함함(안 제103조제1항).
- 다.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의 보관·관리 등 본질적 업무의 위탁이더라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을 위탁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신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 업무 위탁의 특례를 인정함(안 제109조의2제1항 신설).
- 라.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신탁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확인 및 주기적인 점검·조치를 의무화함(안 제109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 마. 파생상품의 장외거래와 관련하여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함(안 제166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0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3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4조제10항제5호에 따른 가상자산

제10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9조의2(신탁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제4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한 신탁 재산인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2. 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
3.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등 요건의 유지 여부, 신탁재산이 위탁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 ④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위탁계약에 대하여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해

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6조의2(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제166조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

제446조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를 각각 제19호의5부터 제19호의11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부터 제1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

19의3. 제109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신탁업자

19의4. 제10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증권) ① ~ ⑨ (생 략)	제4조(증권) ① ~ ⑨ (현행과 같 음)
⑩ 이 법에서 “기초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u>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제103조(신탁재산의 제한 등) ①
신탁업자는 다음 각 호의 재산 외의 재산을 수탁할 수 없다.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u><신 설></u>	8. <u>제4조제10항제5호에 따른 가 상자산</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109조의2(신탁업자의 업무위탁 등의 특례) ① 신탁업자는 제4 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탁한 신탁재산인 가상자산의</u>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가상자산사업자(「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가상자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해당 업무를 위탁하기 전에 미리 신탁계약의 위탁자(신탁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수익자)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2. 신탁업자가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전문성, 재무건전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건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위탁계약에 포함할 것

3. 제10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하지 아니할 것.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확인의 결과를 제42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때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재무건전성 등 요건의 유지 여부, 신탁재산이 위탁계약에 따라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자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 법 또는 위탁계약에 대하여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이를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그 위반상태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4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19. (생략) <u><신 설></u> <u><신 설></u>	<u>⑤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해당 업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u> <u>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수익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166조의2(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의 장외거래) 제166조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에는 경쟁매매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다.</u> 제446조(벌칙) ----- ----- ----- -----. 1. ~ 19. (현행과 같음) <u>19의2. 제10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한 자</u> <u>19의3. 제109조의2제4항을 위반</u>
---	--

<u><신 설></u> <u>19의2. ~ 19의8.</u> (생 략) 20. ~ 64. (생 략)	<u>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가상자 산사업자로 하여금 위반행위 를 해소하게 하거나 위탁계약 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 지 아니한 신탁업자</u> <u>19의4. 제109조의2제5항을 위반 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 에게 재위탁한 자</u> <u>19의5. ~ 19의11.</u> (현행 제19 호의2부터 제19호의8까지와 같음) 20. ~ 64. (현행과 같음)
--	---